

폐기물처리 관리규정

제 정	1996. 3.
개 정	1999. 9.
개 정	2007. 11.
개 정	2013. 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는데 관련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폐기물이라 함은 실험폐수, 쓰레기, 연소재, 오니, 폐유, 폐알카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.

제3조 (종류)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생활폐기물: 사업장 이외의 폐기물
2. 사업장일반폐기물: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서 사업장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
3. 건설폐기물: 토목,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폐토사, 폐벽돌, 콘크리트덩이,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
4. 지정폐기물: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,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
5. 실험폐수: 실험실습실에서 실험 후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수

제4조 (업무관장) 폐기물 관리는 총무처(2013.1.1.)에서 주관한다.

제5조 (관리와 책임) 폐기물 처리의 관리 책임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진다.

제6조 (폐기물처리관리) ①폐기물은 위탁하여 처리한다.

- ②폐기물처리 관리자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한다.
- ③폐기물처리관리자는 폐기물의 수집, 운반, 처리방법의 개선과 처리사업의 수행을 하여야 한다.
- ④폐기물처리관리자는 자연환경,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와 폐기물의 감량화, 자원화를 위한 노력 및 토지, 건물의 관리자는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관리자는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⑥폐기물 처리시 별첨의 폐기물(폐수)처리 지침을 따라 처리한다.

제7조 (방법)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폐기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폐기물처리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각종 일반 폐기물의 수거는 수거방침에 의해 위탁처리하며, 특정폐기물은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.
3. 폐 가구를, 건설 폐기물, 폐 합성수지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, 압축, 파쇄, 절단, 용융후 처리해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 한다.
4. 특정폐기물은 실험폐수와 각종 공사시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있다.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수(폐수원액, 1차 세척폐수, 2차 세척폐수)는 각 실험실의 폐수통에 보관하여야 하며, 일정량이 모아지면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저장고로 보내어 처리하여야 한다. 건설 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. 1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